

광주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나68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나6843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872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허재영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872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340,934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340,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의 전부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사해행위 일부 취소로의 변경은 청구취지 감축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동일한 소송물로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가액배상으로의 변경은 청구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 7, 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해행위(2019. 11. 4.)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185,000,000원인 사실, 사해행위 이후인 2023.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근저당권자 I’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이 338,957,000원,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14,340,9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가액 153,957,000원(= 338,957,000원 - 185,000,000원) 중 채무자 C의 상속지분 2/9 상당액 43,987,714원(= 153,957,000원 × 2/9 지분, 소수점 이하 버림)이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340,934원이므로, 더 적은 금액인 14,340,934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40,93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경중, 판사 이지영

별지